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869 발의연월일: 2020. 11. 3.

발 의 자:송기헌・윤재갑・신정훈

홍성국 · 김남국 · 소병훈

박영순 · 이해식 · 김홍걸

허 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는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혁신도시 내 기업·대학·연구소 등의 유치·창업 지원 및 이를 위한 대외협력 및 홍보, 기업 등 입주기관과 이전공공기관 간 협력 증진, 혁신도시 지역특화발전 지원, 정주환경 개선 지원, 지역인재 육성 지원 등을 소관 사업으로 하고 있음.

한편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역할에 혁신도시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도 담당할 수 있도록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혁신도시 내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경우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지적이 있음.

이에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을 추가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지식산업센터의 시설관리 및 분양·임대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가 혁신도시의 조성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3제2항제8호 및 제57조제3 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3제2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혁신도시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제5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소관 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4 5조의3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식산업센터의 시 설관리 및 분양·임대에 관한 업무를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에 위탁 할 수 있다.

제8장에 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7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또는 관련 법인·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7조의3(혁신도시 발전지원센	제47조의3(혁신도시 발전지원센
터 설치·운영 등) ① (생 략)	터 설치·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발전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	2
의 사업을 수행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u><신 설></u>	8. 혁신도시 지원 사업과 관련
	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u>8.</u> (생 략)	<u>9.</u> (현행 제8호와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5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②	제5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②
(생 략)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소관
	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
	사는 제45조의3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
	식산업센터의 시설관리 및 분
	양·임대에 관한 업무를 혁신도
	시 발전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u> <신 설></u>	제5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7조제3항에 따라 위
	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혁신

도시 발전지원센터 또는 관련 법인·단체의 임직원은 「형 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 원으로 본다.